

# 2025년 관세사 1차 시험 대비 개정 공지

윤준필 관세사

- 관세법(2024.12.31.), 관세법 시행령(2024.12.3.), 관세법 시행규칙(2024.12.31) 각 일자별로 개정됨.
- 관세사 시험은 시험일 당일 시행 중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적용됨.
- 1차 시험의 경우 1월 1일 시행을 기준으로 반영됨.  
(본 개정 공지 중 2025년 4월 1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사항은 제외되어 있음)

## 1. 교재 p24 → ㉠ (1) 신고서류의 보관(법 제12조 제1항)

- 자료제출자 및 서류보관기간 기산일 표현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관세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신고필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관세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u>보세운송신고를 한 자 또는 제출된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한 자는 신고 또는 작성한</u>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신고필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u>신고일 또는 자료 제출일</u> 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 2. 교재 p44 → ㉠ (1) 관세부과의 제척기간(법 제21조 제1항)

- 무신고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연장

개정 전	개정 후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합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 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u>다음의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u> 부과할 수 없다.  ① <u>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법 제16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 : 7년</u> ② <u>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 10년</u>

3. 교재 p102 → ① (4) 세액심사시 세관장의 보완요구(법 제38조 제3항 신설)

- 세액심사시 세관장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3) 세액심사 (4) 세액심사 방법에 관한 기준 관세청장은 세액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심사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5) 자율심사 (6) 세부규정 (7) 준용규정	(3) 세액심사 (4) 세액심사시 세관장의 보완요구 <u>세관장은 세액심사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u> (5) 세액심사 방법에 관한 기준 (6) 자율심사 (7) 세부규정 (8) 준용규정

4. 교재 p115 → ⑦ (2)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법 제42조 제2항)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율(40%→60%) 상향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기 (1) ②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u>부족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u> 과 상기 (1) ②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5. 교재 p115 → ⑦ (3) 무신고 가산세(법 제42조 제3항)

- 무신고 중 밀수출입죄 해당 가산세율(40%→60%) 상향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①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법 제269조(밀수출입죄)의 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40)	①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법 제269조(밀수출입죄)의 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u>100분의 60</u> )

6. 교재 p275 → √ 핵심체크 감면대상 및 감면율(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 환경오염방지물품 감면율 하향 및 적용기한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p>상기 1. (2)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의 구분과 같다.</p> <p>상기 1. (1) ③에 따른 물품: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p> <p>① 규칙 제59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p> <p>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50</p>	<p>상기 1. (2)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의 구분과 같다.</p> <p>상기 1. (1) ③에 따른 물품: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p> <p>① 규칙 제59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u>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u>)</p> <p>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u>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u></p>

7. 교재 p293 → ㉓ (4) 환급받을 자에 대한 확인(시행령 제54조 제4항)

• 모바일 신분증 도입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p>한국은행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환급받을 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그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한국은행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환급받을 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u>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u>) 기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그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p>

8. 교재 p295 → ㉠ (1)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법 제106조 제1항)

-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의 반입장소로 통관우체국 추가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p>㉠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법 제 156조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반입한 경우로 한정한다)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p>	<p>㉠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반입한 경우로 한정한다)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p> <p>㉡ 보세구역(법 제156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p> <p>㉢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p> <p>㉣ <b>통관우체국</b></p>

9. 교재 p321 → ㉢ (2) 중복조사 금지(법 제111조 제2항)

- 중복조사 금지 대상 기타사유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p>㉤ 그 밖에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 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 그 밖에 <b>상기 ㉠부터 ㉣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b>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10. 교재 p392 → ㉠ (1) 입항보고 및 첨부서류(법 제135조 제1항)

- 입항보고 제출서류의 제출시기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p>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재화물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국제무역선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 출발항의 출항허가증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이나 승무원 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p>	<p>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b>입항하려는 때에는</b> 선장이나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재화물목록을 첨부하여 <b>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b>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국제무역선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 출발항의 출항허가증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이나 승무원 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p>

11. 교재 p394 → ㉓ (1) 출항허가(법 제136조 제1항)

- 출항허가 시기를 규정한 관세청장 고시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u>출항하기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u>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12. 교재 p401 → ㉑ (5) 하역통로 및 기간 제한(법 제140조 제5항)

- 하역 제한규정 관련 관세청장 고시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세관장은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물품을 하역하는 장소 및 통로(이하 “하역통로”라 한다)와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세관장은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물품을 하역하는 장소 및 통로(이하 “하역통로”라 한다)와 <u>기간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u> 제한할 수 있다.

13. 교재 p423 → ㉓ (1) 외국물품 등의 보세구역 장치(법 제155조 제1항)

- 보세구역 장치 대상물품을 원칙과 예외로 나누어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외국물품과 법 제221조 제1항에 따른 내국 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u>외국물품은</u>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교재 p440 → ㉓ (6) 보세사 행정제재에 대한 세부기준(법 제165조 제6항 신설)

- 보세사 행정제재 세부기준 신설 및 기존 조항 수정

개정 전	개정 후
(6) 보세사 응시제한 (7) 세부규정	(6) 보세사 행정제재에 대한 세부기준 <u>상기 (5)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조치의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u>  (7) 보세사 응시제한 (8) 세부규정

15. 교재 p458 → ㉔ (1) 특허보세구역 장치기간(법 제177조 제1항)

- 보세창고 내 내국물품의 장치기간 연장규정을 외국물품과 통일

개정 전	개정 후
㉔ 내국물품(㉔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㉔ 내국물품(㉔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b>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b>

16. 교재 p486 → ㉑ (1) 기업규모별 보세판매장 특허비율(법 제176조의2 제1항)

- 보세판매장 특허비율 부여 규정의 가독성 제고

개정 전	개정 후
세관장은 상기 VI. 1. (1)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매출액, 자산총액 및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 중 법 제174조 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은 VI. 1. (2)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입국장 보세판매장)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등에게만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	세관장은 상기 VI. 1. (1)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b>다음의 기업으로서</b> 매출액, 자산총액 및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 중 법 제174조 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은 VI. 1. (2)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입국장 보세판매장)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등에게만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 <b>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b> <b>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b>

17. 교재 p486 → ㉑ (3) 보세판매장 특허 심사(법 제176조의2 제3항)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가 갱신 때는 제외되었던 규정 삭제

개정 전	개정 후
보세판매장의 특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부여한다. 기존 특허가 만료되는 경우(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보세판매장의 특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부여한다. 기존 특허가 <b>만료되는 경우에도(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b> 또한 같다.

18. 교재 p514 → ㉠ (1) 유치대상 및 유치사유(법 제106조 제1항 ② ㉠)

- 유치대상 중 지식재산권의 범위 확대

개정 전	개정 후
㉠ 법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등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35조에 따른 <b>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b>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등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19. 교재 p519 → ㉡ (1) 매각 전 반출통고(법 제209조 제1항)

- 매각 전 통고일 관련 관세청장 고시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세관장은 장치기간이 경과된 외국물품을 매각하려면 그 화주 등에게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장치기간이 경과된 외국물품을 <b>매각하려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b> 그 화주 등에게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20. 교재 p539 → ㉢ 세부규정(법 제221조 제3항 신설)

- 내국운송 관련 기타 세부규정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 내국운송의 신고 ㉡ 준용규정	㉠ 내국운송의 신고 ㉡ 준용규정 ㉢ 세부규정 <b>상기 ㉠ 및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국운송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b>

21. 교재 p563 → ㉣ (3) 세부규정(법 제232조의2 제3항 신설)

-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관한 기타 세부규정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1) 원산지증명서 발급 (2)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제출요구	(1) 원산지증명서 발급 (2)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제출요구 (3) 세부규정 <b>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요청 기한 및 발급 기관 등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b>

22. 교재 p570 → ② 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법 제234조의2 신설)

- 수출입 제한 품목 대상에 불법 마약류 추가

개정 전	개정 후
① 수출입의 금지 ② 지식재산권 보호	① 수출입의 금지 ② <u>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u> 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 료물질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는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③ 지식재산권 보호

23. 교재 p570 → ③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법 제235조)

- 법조 제목 수정(보호대상 지식재산권 확대 차원)

개정 전	개정 후
지식재산권 보호	<u>지식재산권 등의 보호</u>

24. 교재 p571 → ③ (1) 보호대상 지식재산권 등(법 제235조 제1항)

- 보호대상 지식재산권 범위에 방위산업기술 추가

개정 전	개정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① ~ 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지식재산권 등</u> 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 다.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u>방위산업기술 보호법</u> 」에 따른 방위산업 기술(이하 “방위산업기술”이라 한다)

25. 교재 p571~573 → (2) ~ (7)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등” 수정

• 선행 조항 개정에 따른 표현 단순 수정(법 제235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

개정 전	개정 후
<p>(2) 관세청장에 대한 신고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u>지식재산권 등을</u>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u>지식재산권 등을</u>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p> <p>(3) 세관장의 통보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상기 (2)에 따라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 신고등”이라 한다)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p> <p>(4) 권리자의 통관보류 또는 유치 요청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p> <p>(5) 세관장의 통관보류 또는 유치 등 ...(중략)...</p> <p>① ~ ⑥</p> <p>(6) 세부규정 상기 (2)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에 관한 신고,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허용 및 유치·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7) 세관장의 직권 조치 세관장은 상기 (3)에 따른 물품이 보호대상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 등을 한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p>	<p>(2) 관세청장에 대한 신고 관세청장은 보호대상 <u>지식재산권 등을</u>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u>지식재산권 등을</u>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u>지식재산권 등</u>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p> <p>(3) 세관장의 통보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상기 (2)에 따라 신고된 <u>지식재산권 등을</u>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u>지식재산권 등을</u>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p> <p>(4) 권리자의 통관보류 또는 유치 요청 제1항에 따른 <u>지식재산권 등을</u>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p> <p>(5) 세관장의 통관보류 또는 유치 등 ...(중략)...</p> <p>① ~ ⑥ &lt;현행과 같음&gt;</p> <p><b>㉞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이 사용된 물품</b></p> <p><b>㉟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방위산업기술</b></p> <p><b>㊱ ㉟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임을 알고 취득한 방위산업기술</b></p> <p>(6) 세부규정 상기 (2)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u>지식재산권 등</u>에 관한 신고,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허용 및 유치·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7) 세관장의 직권 조치 세관장은 상기 (3)에 따른 물품이 보호대상 <u>지식재산권 등을</u>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 등을 한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p>

26. 교재 p598 → ㉠ (2) 세부규정(법 제246조 제2항)

- 검사 세부규정의 구체화

개정 전	개정 후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u>검사방법, 검사 장비·시설 및 검사인력 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u> 정할 수 있다.

27. 교재 p603 → ㉠ (1) 신고의 수리

- 관세사인 신고인과 화주가 모두 직접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세관장은 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또는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에 따른 신고가 관세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7조 제2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이 직접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세관장은 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또는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에 따른 신고가 관세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7조 제2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u>신고인(신고 명의인이 화주가 아닌 경우에는 화주를 포함한다)</u> 이 직접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28. 교재 p643 → ㉡ (1) 과세자료제출 대상기관(법 제264조의2 제1항)

-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개정 전	개정 후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① ~ ⑥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u>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u> 」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u>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u> 」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자로 한정한다)

29. 교재 p654 → ㉔ 무기의 휴대 및 사용(법 제26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휴대 무기의 구체화(제1항)

개정 전	개정 후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에 따른 장비, 장구, 분사기 및 무기(이하 이 조에서 “무기등”이라 한다)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 사용요건 관련 타 법률 준용 추가(제2항) 및 제3항 삭제

개정 전	개정 후
제2항 (2) 무기의 범위 세관공무원이 직무집행으로 필요시 휴대 가능한 “무기”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권총 또는 소총에 한정한다), 도검, 분사기 또는 전자총격기를 말한다.	제2항 (2) 무기 사용요건 세관공무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에 준하여 무기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3항 (3) 무기 사용요건 세관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할 때 특히 자기나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고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 또는 저항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사태에 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3항 (3) 무기 사용요건 <del>세관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할 때 특히 자기나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고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 또는 저항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사태에 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del>

30. 교재 p669 → ④ 가격조작죄(법 제270조의2)

• 처벌기준 금액의 합리적인 기준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p>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① 법 제38조의2 제1항·제2항에 따른 보정 신청</p> <p>② 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p> <p>③ 법 제241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신고</p> <p>④ 법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입항전 수입신고</p>	<p>(1) 처벌대상 다음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u>아래 (2)에 따른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p> <p>① 법 제38조의2 제1항·제2항에 따른 보정 신청</p> <p>② 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p> <p>③ 법 제241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신고</p> <p>④ 법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입항전 수입신고</p> <p><u>(2) 벌금형 산정기준</u>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한다.</p> <p>① 5천만원</p> <p>② 물품원가</p> <p>③ 다음 ㉠ 및 ㉡ 간의 차액</p> <p>㉠ <u>상기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를 한 물품가격</u></p> <p>㉡ <u>과세가격(법 제24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 또는 반송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u></p>

31. 교재 p670 → ㉗ 명의대여행위죄 등(법 제275조의3)

- 타인 명의를 불법도용한 자에 대한 처벌수준 차등 부과

개정 전	개정 후
<p>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①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법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 ②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법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자</p>	<p><b>(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자</b>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b>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b>에 처한다.</p> <p>① <b>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자</b> ②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법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자</p> <p><b>(2)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b>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법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32. 교재 p672 → ㉙ 허위신고죄 등 (1)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금액 이하의 벌금 (법 제276조)

- 조항변경에 따른 단순 수정

개정 전	개정 후
<p>④ 법 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사항(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법 제275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p>④ 법 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사항(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b>법 제275조의3 제1항 각 호에</b>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33. 교재 p672 → ㉙ 허위신고죄 등 (2)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76조)

- 조항변경에 따른 단순 수정

개정 전	개정 후
<p>⑥ 법 제3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자율심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p>	<p>⑥ <b>법 제38조 제4항</b> 후단에 따른 자율심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p>

34. 교재 p675 → (6)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77조 제6항)

• 조항변경에 따른 단순 수정

개정 전	개정 후
② 법 제38조 제3항(자율심사 결과제출) (이하생략)	② <b>법 제38조 제4항</b> (자율심사 결과제출), .... <이하 현행과 같음>

35. 교재 p717 → (12) 세부규정(법 제322조 제12항)

• 내용 구체화에 따른 추가

개정 전	개정 후
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 통계, 통계자료, 통계의 열람 또는 교부 절차와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 통계, 통계자료, 통계의 열람 또는 교부 절차, <b>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해제와</b>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6. 교재 p718 → (4) 준용규정(법 제322조의2 제4항)

• 세부규정에서 준용규정으로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4) 세부규정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4) 준용규정</b>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b>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를 준용한다.</b>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중 “연구개발비”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정부” 및 같은 조 제2항·제6항·제7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관세청장”으로 본다.

37. 교재 p731 → (12) 검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 (13) 시정명령 등의 조치

(법 제327조의2 제12항 및 제13항 신설)

• 검사 및 시정명령 조치 추가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11) 관세청장의 지도·감독	(11) 관세청장의 지도·감독 <u>(12) 검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u> 관세청장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세정보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세정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u>(13) 시정명령 조치</u> 관세청장은 제12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정보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8. 교재 p738~739 → (4) 보세화물 처리의 위탁(법 제329조 제4항 단서 신설)

• 보세운송업자 등록 관련 절차의 위임 추가 및 위임 범위의 한정

개정 전	개정 후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57조(물품의 반입·반출), 제158조 제2항(보수작업 승인), 제159조 제2항(해체·절단 등의 작업 허가), 제165조 제3항(보세사 등록), 제209조(매각 전 통고), 제213조 제2항(보세운송신고의 접수만 해당한다)·제3항(보세운송물품검사), 제215조(보세운송 보고), 제222조 제1항 제1호(보세운송업자 등록) 및 제246조 제1항(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의 검사)에 따른 업무를 다음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 ④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57조(물품의 반입·반출), 제158조 제2항(보수작업 승인), 제159조 제2항(해체·절단 등의 작업 허가), 제165조 제3항(보세사 등록), 제209조(매각 전 통고), 제213조 제2항(보세운송신고의 접수만 해당한다)·제3항(보세운송물품검사), 제215조(보세운송 보고), <u>제222조 제1항(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제3항(영업보고 및 서류제출 명령)·제5항(등록의 유효기간)</u> 및 제246조 제1항(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의 검사)에 따른 업무를 다음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u>다만, 제222조 제1항·제3항·제5항에 따른 업무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보세운송업자) 및 제2호(화물운송주선업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u> ① ~ ④ <현행과 같음>

39. 교재 p739 → (5)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일부업무 수탁기관(법 제329조 제5항 ① 신설)  
 • ① 신설 후 기존 ①부터 ④ → ②부터 ⑤로 변경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p>관세법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업무 중 다음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① ~ ④</p>	<p>관세법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업무 중 다음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① <u>법 제165조 제1항에 따른 보세사 시험 업무</u></p> <p>② ~ ⑤ &lt;기존 ① ~ ④와 같음&gt;</p>

(이상)